

## 통신 기기 제조 사업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외이도암

|    |    |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|
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성별 | 여성 | 나이 | 35세 | 직종 | 통신 기기<br>제조 관련 종사자 | 직업관련성 | 낮음 |
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
### 1 개요

□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 ○○○은 2004년 07월, 만 21세에 입사하여 통신 기기 제조 관련 업무에서 약 14년간 근무하였다. 2018년 06월경부터 좌측 귀에 이루 증상이 있어 중이염 및 진주종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이상 소견으로 2018년 09월 10일 대학병원 내원하여 외이도암으로 진단받았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 경과관찰 중 2019년 03월 28일 사망하였다. 14년간 근무하며 야간작업 및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07월 2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### 2 작업환경

근로자는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9월까지 □사업장에서 통신 기기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.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제품의 기능 및 외관 검사를 수행하였고 제품 조립 업무도 수행하였다.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용한 물질은 이소프로필알콜(IPA)와 에탄올이었으므로 상기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.

또한 근로자는 약 14년간 평균 65시간 정도의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, 7년 5개월간은 4조 3교대로 근무하였고, 6년 7개월은 2조 2교대 8시간으로 근무하였다.

### 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암

### 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### 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18년 6월경부터 시작된 좌측 이루를 증상으로 7월경 의원에 내원하여 진주종을 동반한 중이염으로 진료 받았다. 두통이 심해져서 2018년

8월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및 CT검사서 외이도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 타대학병원에 전원 되었고, 뇌경막 침범을 동반한 외이도 암 진단 하에 10월 16일 종양제거 및 유돌절제수술을 받았다. 수술 중 시행한 조직검사에 따라 외이도암으로 진단받았다. 수술 후 근로자는 청력소실 및 좌측안면마비가 발생하였다. 수술 이후로 약 7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 관찰 중 수행한 골스캔 촬영결과 좌측 두정엽에 암종이 침범된 소견이 발견되었고, 2018년 12월 28일 수행한 CT검사서 재발소견과 함께 림프절 전이, 좌측 후두엽 및 경추 부위, 좌측 내경동맥으로의 침범이 관찰되었다. 완화치료를 위해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경과가 악화되어 2019년 3월 28일 사망하였다.

근로자는 어렸을 때에 좌측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, 외래 진료기록 및 수진 내역 상 반복적인 만성 비염과 부비동염으로 1년에 2-4번 주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수진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외에 2014년에 자궁내막증으로 복강경술을 받았으나 질환과 관련한 특이질환은 없었다. 병원 기록 및 유가족 면담에 의하면 근로자는 흡연은 하지 않았고 특이질환 등의 가족력은 없었다.

## 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35세가 되던 2018년에 외이도암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18년 9월까지 약 14년간 □사업장에서 통신 기기 제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. 상병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오래 지속된 만성적인 화농성중이염의 선행이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 유형의 암에서 두정부 암 치료의 목적의 방사선 조사가 관련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드문 질환으로 아직까지 직업적 요인으로서는 알려진 것은 없다. 근로자는 약 14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소프로필알콜과 에탄올에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.